

IFES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2019-2 (No. 64), 2019. 8

한일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 사 회 : 이 수 훈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주일한국대사)
- 토 론 : 김 민 석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길 윤 형 한겨레신문 (전 도쿄특파원)
- 이 원 덕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정 해 경 역사학 박사
(전 국무총리소속 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조사과장)
- 조 진 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남 상 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장

일 시 : 2019년 8월 8일 (목), 14:00~17:30

장 소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 (1층)



I F E S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목 차

I. 주제발표 5

최근 한일관계와 과제: 경제전쟁 • 7

이수훈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주일한국대사)

II. 토론 11

1. 토론문 • 13

길윤형 한겨레신문 (전 도쿄특파원)

2. 대결로 치달는 한일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 21

징용문제에 대한 4가지 선택

이원덕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3. 일제강제동원문제 - 한국의 대응 • 29

정혜경 역사학 박사

(전 국무총리소속 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조사과장)

4. 토론문 • 37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5. 한일관계 진단과 해법 • 49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장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자료집 발간 목록 63

※ 회원가입 안내 77

I. 주제 발표

최근 한일관계와 과제: 경제전쟁

이수훈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주일한국대사)



“최근 한일관계와 과제: 경제전쟁”

이 수 훈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주일한국대사)

1. 사태의 구조적 해석

○ 전후 미국 헤게모니체제의 위기

- 미국의 퇴조와 중국의 부상=>패권경쟁으로 귀결
- 달리 표현하자면 1951년 샌프란시스코체제(일본을 미국 자신의 헤게모니체제의 하위파트너로 삼았음, 남한은 그 연장선상에 위치지워졌음)의 위기
- 미국 헤게모니체제는 반공을 공통의 작동원리로 삼았고, 냉전체제라 불리기도 했음=>1989년 글로벌 탈냉전으로 이마저 위기를 맞았음

○ 그 하위체제랄 수 있는 65년협정체제도 위기

- 65년 체제는 ‘반공’과 ‘역사통합’이라는 두 요소로 구성되었음, 반공은 사라졌고 역사통합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도전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
- 한국의 위상 변화와 남북화해협력프로세스의 본격 가동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

○ 아베정부의 행동은 ‘유사패권’ (pseudo-hegemony) 추구 행위

- 일본은 경제력, 군사력, 문화적 지도력 등에서 패권세력이 될 역량이 크게 미흡
- 패권에 대한 열망으로만 충만해 있어 성공 가능성이 없음

2. 아베정부의 가버넌스

○ 8년에 걸친 장기 집권에 따라 아베 신조 총리 중심의 강력한 통치시스템 구축

- 아베 신조라는 정치인
- 유일 정당이라 할 수 있는 자민당
- 지리멸렬하고, 대안이 될 수 없는 야당들(입헌민주당 외)
- 정보의 독점(내각 관방 내 경찰 출신 인사들의 힘), 안보와 외교의 독점적 활용(NSC, 미일동맹, 북한과 한반도), 언론과의 유기적 협조
- 무기력한 시민사회

○ 내각 관방의 구성

- 스가 관방장관, 니시무라 부장관, 하세가와 부장관, 스기타 부장관(경찰 출신), 기타무라 정보관(경찰 출신), 이즈미보좌관, 이마이 비서관

○ NSC와 야찌국장

- NSC는 아베총리가 미국의 모델을 따라 만든 외교안보 콘트롤타워
- 야찌국장은 노련한 내셔널리스트; ‘위안부 합의’ 협상을 진행했음; 소녀상 이전에 강한 입장 견지

○ 2021년 9월까지 아베총리 3선 임기

- 자민당 내에 대체재가 없음 (이시바, 기시다, 고이즈미, 스가)
- 아베 신조의 4선 시나리오
- 아베의 남은 정치적 목표는 평화헌법의 개정 (제9조에 자위대를 표기),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납치문제)

3. 한일 경제전쟁

- 1) 이번 사태의 성격은 일본정부의 일방적 수출제한조치에 의한 한일 경제전쟁이다. 워싱턴에서 미국 전문가들이 무역분쟁이라고 하더라. 잘못된 인식이라고 했다.
- 2) 전쟁이기 때문에 일단 싸워야 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국민의 단합된 모습이 중요하다. 내부 분열은 금물이다. 일본정부가 야기한 사태다. 야당에서 우리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외교참사’라 하는데 적절하지 못한 비판이다.
- 3) 일본정부의 조치는 자유무역질서에 반하는 것이며, 글로벌 밸류체인을 파괴하는 도발이다.
- 4) 한국과 일본의 주요 산업은 긴밀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기에 피해도 쌍방향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다.
- 5) 일본정부는 조치를 내리면서 처음에는 신뢰, 다음에는 수출 관리, 또 안보를 들고 나오면서 골대를 수차례 옮겼다.

- 6) 아베총리와 관저가 주도한 이 조치의 바탕에는 위안부 합의 파기(특히 화해, 치유재단 해산), 대법원의 징용 판결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보복조치가 분명하다.
- 7) 따라서 이 사태는 아베정부가 과거사에서 비롯된 감정을 경제분야로 표출시킨 데서 비롯되었다. 한일관계를 지탱해주는 정경분리, 투 트랙원칙을 저버렸다. 과거사 문제는 그것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되 미래지향적인 실질협력은 별개로 확대 발전시켜나가는 기조로 돌아가야 한다.
- 8) 일본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1965년 청구권협정의 위반, 즉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65년 협정을 부정하지 않으며, 불법적 식민지배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가해기업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 9) 65년청구권협정에 따르더라도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 있다. 일본정부 외교 고위인사들(야나이 순지 조약국장의 1991년 발언, 고노 타로 외무대신의 2018년 11월 발언)의 발언, 정치인들(2018년 12월 시이공산당위원장 및 누카가의의원 발언 등등)의 발언에 따르더라도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것이다.
- 10) 징용 문제의 해법을 양국 정부가 협의를 통해 만들어내야 한다. 6.19 우리 정부 방안을 기초로 두 정부가 접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과 같이 고압적이고 일방적 자세로는 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 없다.

II. 토론

토론문

길윤형 한겨레신문 (전 도쿄특파원)

대결로 치닫는 한일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징용문제에 대한 4가지 선택

이원덕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일제강제동원문제 - 한국의 대응

정혜경 역사학 박사

(전 국무총리소속 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조사과장)

토론문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한일관계 진단과 해법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장

1

토론문

길 윤 형

한겨레신문 기자(전 도쿄특파원)

최근 한일관계의 원인과 해결법에 대해 제 나름의 의견을 세 가지로 나눠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기의 원인입니다. 현재 위기를 벗어나려는 ‘단기적 해법’은 양국 모두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조처를 ‘동결’ 하고,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발생한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한-일 양국 정부의 인식차를 좁힐 수 있는 외교 협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한 의도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모임에 참석하기 앞서 저는 7월1일부터 8월6일까지 일본 총리 관저와 청와대 홈페이지 등을 검색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각각 언급한 발언을 전수조사 했습니다. 이

를 통해 매우 흥미로운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정부가 이번에 취한 조치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총리관저에서 여러 차례 취재진과 ‘간이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7월1일엔 판문점에서 이뤄진 ‘깜짝’ 북-미 정상회담, 7월9일엔 일본 국내 문제인 한센인 소송에 대한 국가의 항소 포기 결정, 7월31일엔 북한이 쏘아올린 비상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짧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한일 간의 갈등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이번 조치의 주무 장관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조치를 매우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일한 예외는 참의원 선거 전인 7월3일 일본기자클럽에서 이뤄진 각당 당수토론 자리에서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역사 문제와 통상 문제를 결부시킨 위험한 결정’이라는 비판성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문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 인식은 정말로 말씀 드리지만 틀린 것이다. 역사와 통상 문제를 결부시킨 것이 아니다. 징용공 문제는 역사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 즉 국가와 국가간의 약속을 지키는가의 문제이다. 1965년 청구권 협정 때 ‘서로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것’ (사실과 조금 차이가 있음)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약속이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다. 또, 위안부 합의는 정상과 외무대신 사이에서 이뤄진 합의였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를 평가했다. 이런 합의, 국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의 인식은 틀렸다. 이번 조치는 WTO에 반하는 조치가 아니고 무역관리의 문제이다. 이는 바세나르 협약이라는 국제적인 룰이다. 일본도 여기에 들어 있다.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를 각 국가가 취해야 한다는 의무이다. 이런 의무가 있는데도 상대

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우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금수조치가 아니다. 우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당연한 판단이며 WTO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상대국 정상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너머에 숨겨져 있는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나온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취한 이유는 ‘한국 정부가 1965년 협정을 지키도록 압박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인식을 밝힌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8년 초 시정방침연설에서 “지금까지 양국 간 국제적 약속과 상호 신뢰를 쌓아 올리는 기초 위에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협력 관계를 심화시켜가겠다”고 말합니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양국 간 국제적 약속’이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12·28 합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국이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내리지 않고, 위안부 합의를 지킨다면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일본도 한-일 관계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경고였습니다. 즉, 일본은 한국 정부에게 65년 체제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수하겠다는 경고를 지속적으로 쏟아내 온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은 ‘실존적’이고 ‘근본적’입니다. 8월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선 “우리는 이번 일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일본의 무역보복을 극복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일본 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합니다. 그에 앞선 8월2일 임시국무회의에선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다”고 말합니다.

즉, 일본이 1965년 이후 한-일 관계의 기반이 되어 있는 65년 체제를 지켜내기 위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건줘, 한국은 일본의 조처를 한국의 성장을 방해하고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을 끊어 패배감을 맛보게 하기 위해 취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설명은 실무적·기술적이지만, 한국의 반응은 근본적·실존적·철학적입니다. 이렇게 한-일이 서로에게 쏟아내는 말의 추상수준이 다르면, 냉정하고 차분한 외교 협의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번 한-일 갈등은 장기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 정부는 하루 빨리 감정을 걷어내고 말의 추상수준을 낮춰야 합니다.

둘째, 식민지배의 불법성 등 한-일 간 근본문제에 손을 대면 타협은 불가능합니다. 일본이 관심이 있는 것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판결 받은 이들의 손해배상금을 누가 감당할지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대응을 요구해왔고(즉, 한국 정부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 한국 정부의 만족스런 응답이 없자 1월9일 청구권 협정 3조1항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외교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반응이 나오지 않자, 5월20일엔 3조2항의 절차에 따라 중재를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이 문제를 한국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6월19일 “소송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화이트 국가 배제 예고 등으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의 발언을 통해 일본이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강제징용을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본 주요 근거는 일본의 식민지배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는 행정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국무총리실 한일

수교회담문서 공개 등 대책기획단 활동을 담은 2007년 <백서>에는 당시 한국 정부가 인식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그 행위 자체로 ‘반인도적 불법행위’인 일부 예외적인 문제를 가리킨 것이지, 강제동원 전반의 문제를 뜻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 한-일 간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회 변화가 불러온 한-일 간 역사인식과 관련된 첫 성과는 일본이 전후 50년을 맞아 1995년에 내놓은 ‘무라야마 담화’였습니다. 이 담화는 “일본은 국가정책을 그르쳐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에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줬다. 이와 같은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다시 한 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무라야마 담화의 역사인식은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발표한 ‘한-일 파트너십 선언’에선 대상이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한국’으로 특정됐고, 일본이 한국을 강제병합한 지 100년이 되던 2010년 간 나오토 당시 총리가 발표한 ‘간 담화’에선 식민지배가 “한국인들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는 한층 진일보한 인식으로 발전합니다. 물론, 아베 총리는 2015년 아베 담화에서 “우리 아이와 손자들에게 영원히 사죄의 숙명을 지게 할 순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일본이 더 이상 지난 역사를 사죄·반성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아베 총리에게 식민지배 불법성과 관련해 한-일이 공통된 인식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국 정부가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현재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외교적 해법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며, 결국 한-일 갈등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베 총리로부터 식민지배가 한국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뤄진 것임을 다시 한 번 인정받고, 이를 통해 한-일 양국 기업과 한국 정부 등 3자가 참여하는 기금 형태의 타협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변화된 외교안보 환경에 맞게 한일관계의 기반

을 다시 짜야 합니다. 해방 이후 한일관계는 크게 세 시기를 거쳐 왔습니다. 제1기는 1965년 국교정상화부터 1980년대 말 냉전 해체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한일관계를 떠받친 기반은 역사 문제를 봉인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의 길을 연 이른바 ‘65년 체제’였습니다.

제2기는 냉전이 해체된 198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부상이 가시화되기 전인 2000년대 말까지입니다. 냉전 해체와 함께 한국이 민주화되자, 일제 식민지배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의 배·보상 요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한-일은 여러 우여곡절이 속에서도 위안부 동원과정의 강제성과 일본 정부의 관여를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와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의 뜻을 담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라는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시기 한일관계를 떠받친 것은 한일이 서로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한 1998년 공동선언이었습니다.

제3기는 중국의 부상이 가시화되며 동아시아에서 미-중간의 패권경쟁이 시작되는 2010년대 이후입니다. 한-일은 두 나라의 국운에 사활적 영향을 끼치는 동아시아의 미래상에 대해 화해하기 힘든 견해차를 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남북관계 강화하고 북한과 미국의 타협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일본은 북-미 간 ‘안이한 타협’을 경계하며 미국이 북한에 엄격한 요구를 이어가도록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 북핵 문제 해결에 비본질적인 납치 문제를 끌어오거나 모든 탄도미사일의 폐기 같은 북한이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쏟아내며 문제 해결을 꼬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65년 체제가 사실상 파기되면서 이를 유지하려는 일본과 여기서 벗어나려는 한국 사이의 최악의 ‘경제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최근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한-일이 ‘좋았던 옛 시절’인 공동선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 또 북한의 ‘핵무력 완성’이라는 동아시아 지정학적 질서의 격변 속에서 이 선언의 기반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미 이 공동선언의 기반이 된 무라야마 담화를 “자손들에게 계속 사죄의 숙명을 지울 수 없다”는 2015년 8월 아베 담화로 덮어 씌웠고,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필생의 과업’ 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일관계의 새 기반이 되는 공동선언엔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일본이 느낄 수밖에 없는 안보 불안에 대한 한국의 이해와 공감, 북핵 문제를 해결해 통일을 지향하려 하는 한국의 입장에 대한 일본의 이해와 공감이 구체화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한국은 일본과 본격적으로 안보 협력도 할 수 있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역사 문제에 대한 또 한 번의 타협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한-일은 서로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이웃’입니다. 다행히 양국 사이엔 두 나라가 공유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기본적 가치’와 지난 20여 년 동안 꾸준히 발전해 온 민간의 끈끈한 교류라는 소중한 자산이 있습니다.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와는 거센 논쟁은 할 수 있지만, 어떤 문제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1998년 공동선언 이후 진행된 양국의 교류와 연대의 역사는 두 나라 사이에 발생한 여러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이 한반도에서 저지른 여러 과오에 대해 반성적 자세를 유지하는 한 한국은 일본의 위협이 아닌 친구로 남을 것임을 일본에 끈질기게 설득해 일본이 한반도의 냉전 해체와 평화 구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관계를 안정된 새 기반 위에 올려놔야 합니다. 또, 이런 기초 위에서 한일 양국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타협점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엔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일본과의 ‘안이한 타협’이 아닌 대법원 판결의 실질적인 집행을 통한 식민체제의 극복이라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일본과의 갈등 해결은 장기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 정부는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황해문화> 여름호 논문 ‘구조적 위기의 한일관계’와 그동안 페이스북 등 개인공간에 쓴 글들을 묶었습니다.**

2

대결로 치닫는 한일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징용문제에 대한 4가지 선택

이 원 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1. 제1 선택 : 징용문제 방치- 한일관계 극단적 악화로 질주

-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 한국 내 일본기업 자산압류-처분금지-매각-현금화-배상지급 (신일철의 포스코 주식, 미츠비시 특허권의 현금화?)

현금화의 시기는 2020년 1월경으로 알려지고 있음. 현금화는 곧 루비콘강을 건너는 것으로 여겨짐.(현금화되면 일 측의 보복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차원에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

- 일본 정부의 보복(대항) 조치: 현재 취해진 수출규제 강화 조치,

화이트리스트 배제 외에 금융보복 조치, 관세 보복, 비자발급 제한, 송금 제한, 일본 내 한국자산 일시 동결 조치 등이 예상.

- 아베 정부는 각 성청으로부터 약 100여 아이템에 이르는 보복 항목을 제출받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중장기적인 한일 경제전쟁으로 비화, 국민감정 동원한 대대적인 한일 갈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
- 한국의 산업, 경제에 주는 타격과 피해는 막대하고 장기화될 것임.
- 더불어 일본의 산업-경제에 주는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됨.
- 피해의 한일 비대칭성에 유의해야 할 것임.(기본적으로 일본은 내수경제, 한국은 대외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임에 유의해야 할 것임)
- 더불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제조업의 국제공급망, 산업의 국제분업구조에도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는 국제 경제질서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2. 제2 선택 : 기금(재단) 조성에 의한 해결 추구

- 6월19일 외교부의 제안: 한 청구권 수혜기업 + 일 징용기업의 자발적자금 거출에 의한 피해자 구제 방안 제시, 일 측 즉시 거부
- 일본 정부는 이 제안으로 징용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현실. 징용기업이 기금조성에 자발적으로 협력할 가능성도 별로 없음. 일본 정부와 일본 내 여론은 일 기업의 자금조성에 반대하고 있어, 일 기업의 행동에 큰 제약이 걸려 있는 상황
- 기업+기업 안에 한국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추가된 진진된 안이 마련 된다면 협상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음.
- ①피해자 그룹과의 조율 ②청구권 수혜기업과의 협의, ③피해자의 수 및 배상액의 규모가 가늠되고 ④ 법원의 소송 시효 판단

이라는 4대요소가 충족될 때 완전한 해결이 될 수 있음.

- 2015년 위안부 합의에 의해 <화치재단> 구성하여 해결에 임했지만 불완전 연소로 끝났다는 점을 상기하면 해결책으로서의 기금방식의 한계를 잘 알 수 있음.(일본 측은 기본적으로 기금방식에 의한 해결에 회의적임)

3. 제3의 선택: 식민불법 + 배상포기 + 피해자 국내구제 선언

- 정부가 특단의 성명 발표로 문제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 3개 사항으로 구성되는 특별성명 발표
 - ①식민지배는 불법적인 강점, 일본은 사죄 반성하는 자세로 임해야 함
 - ②화해와 관용의 정신으로 대일 배상, 보상 등 일체의 물질적 요구는 영원히 포기할 것임
 - ③모든 식민지배와 연관된 피해자의 구제문제는 한국정부의 책임 하에 수행할 것임
- 물질 배상요구 포기하고 정신적 역사청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도덕적 우위에 선 대일 외교가 가능
- 중국이 일본에 대해 행한 전후처리 방식임(이덕보원, 배상포기). 일본은 중국에 속죄하는 의미로 방대한 대중 ODA 실시했음.
- 위안부 문제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의 1993년 선언도 이와 같은 해법: 당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음.(일본에 진상규명+사죄반성+ 후세에 제대로 된 교육을 요구하고 피해자 구제는 한국정부가 나서서 할 것임을 선언)
- 창의적 발상에 의해 한일관계의 국면을 극적으로 전환시키는 해법이 될 수 있음.(한일 양 국민이 윈-윈 할 수 있는 해법)
- 물론 이 성명에 앞서 피해자 그룹과의 사전조율은 필수, 초당적인 지지를 얻기 위한 물밑 대화가 선행되어야.

4. 제4의 선택: 국제사법재판소(ICJ) 공동제소에 의한 해결

1) 해결의 가능성 및 전망

- 최종결론이 날 때까지 3-4 년 이상의 시간 소요: 공동제소 한다면 일종의 한일 간 전쟁을 휴전시킬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됨, 강 대 강의 대결 구도를 차분하고 냉정한 법리 논쟁의 구도로 전환시킬 수 있음.
- 양국이 합의하면 한국에서의 법적 강제집행을 보류할 수 있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도 사실상 철회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임.
- 양국의 최고법원 판결이 상이하므로 제3의 국제사법기관의 판결로 최종결론 내는 것은 평화적 분쟁 해결방식이 될 수 있음
- 재판과정에서 일부승소, 일부패소의 가능성이 명확해지게 되면 양국의 화해에 의한 해결책을 도출할 가능성이 존재함.
- 재판관은 16인으로 구성됨. 15인의 재판관 구성-아시아 3명, 아프리카 3명, 중남미 3명, 동유럽 2명, 구미 4명에 한국 정부가 지명하는 재판관 1명이 추가됨.
- 결과는 일부승소, 일부패소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큼. 일방적 패소는 있을 수 없음.
- 특히 개인의 인권, 권리를 중시하는 국제법의 진화 양상을 고려할 때 반인도적 상황 하에서 이뤄진 강제노동 피해자의 권리를 국가 간 합의에 의해 완전히 소멸할 수 없다는 법리가 준용될 가능성 매우 높음.
- 재판은 피해자의 구제를 둘러싼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되도록 제소하는 것이 마땅함.
- 패소 시의 후폭풍을 염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종적으로 한국이 승소하면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고 패소하면 한국정부가 피해자의 구제를 대행하게 되는 것일 뿐임.
- 일본이 독도 문제를 제소해 올 가능성을 걱정하는 시각도 존재하

나 그런 염려를 할 필요 전혀 없음. 국제사법재판소는 양국이 공동 제소하지 않는 한 재판할 수 없음. 즉 한국은 강제관할권을 수용한 적이 없음.

2) ICJ의 개인 청구권에 대한 판단 전망

- 일본의 최고재판소(2007년 니시마츠판결)은 피해자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나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를 청구할 권능이 없다고 판시.
- 일본의 외무성(1991년 야나이 조약국장 발언, 2018년 고노타로 외상 발언)의 입장: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외교적 보호권은 소멸되었으나 원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님, 다만 그 권리는 행사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
- 한국의 대법원 판결: 개인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았고 불법적 식민지배 하에서 이뤄진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배상)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
- 한국 정부(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의 입장: 법리론과 정책론의 혼재 상황

①대일 외교정책론: 위안부, 사할린 교포, 원폭 피해자 3대 사안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에게 법적인 추궁을 할 것이나 징용 피해자 문제는 청구권 협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간주, 이 결론에 따라 2007년 특별법 제정하여 징용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실시함(6,800억원 규모)

②법리론: 청구권협정에 의해 징용피해자의 청구권 요구에 대해 정부의 외교보호권은 소멸되었으나 개인 청구권 그 자체는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기술이 존재함. 일본 최고법원도 소멸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징용피해자 개인청구권을 우리 정부가 나서서 소멸되었다고 할리는 없음. 다만 그 권리를 법적으로 추궁할 외교적 의도는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한일 양국 정부 및 대법원, 최고재판소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징용 피해자의 권리(청구권)는 국가 또는 국가 간 합의에 의해 결코 소

멸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는 공통항이 존재

- 개인의 인권 및 권리를 존중하는 국제법의 진화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원 권리는 국가 간 합의로 결코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됨.
- 그렇다면 피해자 권리(청구권)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로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임.

3) ICJ의 식민지배 불법성 문제에 대한 판단 전망

- 양국이 공동제소 할 경우 핵심쟁점은 피해자 구제의 여부 및 방법론에 초점을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ICJ는 식민지배의 불법성 여부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됨.
- 다만 피해자의 구제의 시비를 따지기 위해 식민지 불법성 여부를 부수적으로 심의할 수는 있을 것임. 이 경우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판단하여 식민지배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손실에 대해 전면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음. 왜냐하면 21세기 국제사회가 도달한 규범에 따르면 식민지배가 불법이니 배상하라는 식의 판결이 나온 사례는 아직 없기 때문임.
- 다만 징용이 국제법이 금하고 있는 반인도적 강제노동(준 노예제)에 해당 하는지 아닌지가 판단의 중심적 기준이 될 것임.
- 식민지 불법성 문제에 관해 한일 양국의 입장(헌법, 한일기본조약 비준국회,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일관되게 대립, 병행되어 왔음. 즉, 한국의 입장은 일관되게 불법(부당 불법론)이라는 것이고 일본 측의 입장은 불법은 아니라는 것(부당 합법론)임. 이러한 양국의 입장은 ICJ의 어떠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변하지 않고 견지될 것임.

4) 배상금의 적정액에 관한 판단

-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징용피해자에게 지불되어야 할 위자료는 1억원 내외임. 실제로는 지연금을 포함하여 1인당 2억원 가량이

지불될 것으로 추정됨.

- 강제 징용과 유사한 국제적 사례에 비추어 보면 이 금액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일종의 글로벌 스탠더드?)
 - ① 나치 독일의 폴란드인 강제노동자 문제에 관해서 2000년 독일의 슈뢰더 정부는 <기억 책임 미래 기금>을 설립하여 정부와 관련 기업이 각 50% 씩 공동출자 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피해자 970만 명 중 생존 피해자 150만 명에 한해 15,000마르크(약 1,100만원)를 지불하였음.
 - ② 미 클린턴 정부는 2차세계 대전 당시 일본에의 협조를 우려하여 강제로 감금조치 했던 일본계 미국 시민들에 대해 20,000 달러(약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불하였음.
 - ③ 일본 정부는 식민치하에 있던 대만인 출신 일본군 병사들에 대한 보상금조로 200만 엔(약 2,000만원)을 지불하였음.
- 이러한 제 국제사례에 비추어 볼 때 ICJ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1억원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금액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음.
- 2007년 특별법에 의해 지불된 지원금의 경우, 사망 피해자에게 2,000만원, 부상피해자에게 1,000만원, 그리고 생환 피해자에게 병원비 조로 년 80만원이 지불 되었다는 점도 고려될 것으로 예상됨.

3

일제강제동원문제 관련: 한국의 대응

정 혜 경

역사학 박사(전 국무총리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조사과장)

□ 미봉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대응

- 2019년 6월 19일,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주는 방안을 일본 측에 제안(일본정부가 즉각 거부). 재단 설립은 대안 가운데 하나일 뿐.
- 한국정부의 제안 배경 : 원고단 중심의 선별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수립이자 인식의 틀 때문. 피해자 사회와 무관한 논의로 일관한 결과. 재단 설립 제안의 배경인 국무총리실 산하 TF는 전문가들의 논의의 장이었으므로 현재 피해자 사회가 재단 설립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함. 강제동원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나 대응이 필요.

□ 강제동원 피해 권리문제를 둘러싼 상황 진단 - 오해와 희망고문

-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강제동원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과 피해자성의 상실 : 학계(사실 파악 미흡), 한국 사회(일본기업의 중국 피해자 조치, 독일 재단에 대한 오해).
- 정부, 연구자와 시민단체를 비롯한 관련자들, 언론의 책임 : 무책임, 역사문제를 정략적으로 소비.

○ 승소의 환희 대신 시작된 희망고문

- 강제동원피해자의 미불임금과 위자료가 소송을 통해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 직후 법조계가 예상. 작년 연말부터 승소 퍼레이드는 이어지고 있으나 실제로 위자료를 받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위자료를 받기 위한 원고단의 조치(국내 자산 매각 신청)를 둘러싸고 양국 간 첨예한 갈등 국면이 강화되고 있을 뿐.
- 소송을 제기한 측의 목적은 미지급 임금과 위자료를 받기 위함이며 피고는 일본기업. 그러나 일본기업이 미불임금과 위자료를 지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기한 소송은 아니었으므로 피고는 일본기업이지만 이미 소송은 국내의 문제로 자리 잡았고, 해결의 주체는 한국정부가 되었음.
- 정용소송을 통한 피해자 사회의 소득 : 하나는 피해자 권리 인식의 중요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피해자성 상실과 혼란. 열심히 소송을 제기하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요구하는 피해자’ 로써 정부 정책의 고려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기에 소송에 올인하는 경향성.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는 피해자(군인 군무원, 일본기업 관련 자료가 없는 피해자)는 배제된 정책이 되어 버린 셈.

○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은 피해자 사회

- 1946년부터 대일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 단체가 탄생했으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04년 위원회 설립 이전까지 정부는 피해자들의 권리 요구에 대해 ‘가만히 있으라’ 로 일관. 피해자 사회는 2007년 8월 2일 노무현 대

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상법안(태평양전쟁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을 거부권 행사로 폐기시킨 과정을 경험. 거부권 행사 이유는 ‘사망자 유족 : 일시금 5,000만원 연금 월60만원, 귀환생존자 : 일시금 3,000만원 연금 월50만원, 귀환생존자 유족 : 일시금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법조문 때문. 한국전쟁 등 보훈정책 수혜대상자보다 높은 강제동원 지원금에 대해 사회적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았던 것. 2007년에 지원금 제도를 마련했으나 제한적으로 운영했고, 위원회 폐지 이후 정부의 창구는 사라졌음.

- 70년이 넘는 동안 피해자 사회의 역사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음과 동시에 피해자성을 잃어가는 시기. 피해자성이란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확산하려는 의지.
- 그러나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가 희박하고 그나마 중단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진상규명의지를 갖기는 어려우며, 소위 명망가들이 주도하면서 피해자 사회의 분열을 가속화. 정보는 범람하지만 내용을 보면, 편향되고 제한적.

□ 향후 한국 정부의 역할 - 진상규명을 통한 대일역사문제의 실타래 풀기

-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학계와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방식이 바람직
- 미봉책을 버리고, 정책의 일관성 · 지속성 · 책임성(한국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통한 신뢰 회복)
- 대일역사문제를 외교 현안으로만 파악하고 즉자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사회에 준 상처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
-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기능 회복 : 강제동원 진상규명 작업은 국가적 책무이자 세계적 추세. 조직 규모와 무관한 상설기관 운영. 정부는 법에 근거해 인력이나 예산, 외교력과 행정력 등을 토대로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함
- 적극적 자료 수집과 공유 : 자료수집의 대상지역을 확대(일본, 러시아, 스위스, 영국, 호주 등 국제적십자와 포로 관련 국가 포함), 일본의 아시아역사자료센터와 같은 공유 시스템 마련

- 한국 사회가 한일관계를 넘어선 인식의 확산으로 나아가도록 방향 설정하고 지원 : 아태전쟁 피해자의 범위를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
- 피해자 사회와 신뢰관계 회복 : 피해자를 소외한 방식의 논의 구조를 지양
- 국가보훈정책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함
- 공동 아젠다를 설정해 주제별로 해결을 추진 : 중단기 대책으로 가능

○ 단기 대책 : 연내 시행 가능

- 위로금 제도 부활 : 4.16 유족들 집회, 법제화 운동
- 연구자용 명부 DB와 구술자료 등 현재 활용 가능한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 연구재단 토대연구사업 활성화 : 사전 발간, 법령 정리 등 기초 연구

○ 중장기 대책

- 일본지역 노무자 유골 봉환 추진 : 한일정부간 협의 중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독도방문으로 중단된 사업
- 러시아 시베리아포로 억류 자료 입수 추진, 사할린 기록물 입수 사업 재개
- 전쟁유적 전수조사 : 지역별 전수조사 실시(일본은 교육청 차원의 전수 조사 완료)
- 전쟁유적 유네스코 등재운동 지원 : 인천시 부평구 유네스코 등재 운동
- 정부 차원의 남북 공동 대응 : 3대 방안(자료 공유, 공동조사, 정부차원의 유골수습 및 봉환)

□ 학계의 역할

- 사회적 책임감 인식 : 자료 오독이나 선행연구에 대한 무비판적 답습, 검증되지 않은 주장 남발은 무책임한 사례. 예 : 1944년 징용설
- 연구 활성화 : 학제적 연구방법론 시도, 관련국 공동연구, 국내 소장 자료 분석. 관련국 공동연구의 사례 : 외교부 지원으로 2014년에 동북아역사재단이

개최한 두 차례의 국제 학술행사(2014.7.29. 일제침탈사 국제공동연구 워크숍, 2014.11.20-21. 일제침탈사 국제공동연구 학술회의)는 베트남·타이완·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를 포함해 호주·프랑스·미국 등 여러 나라 전문가들이 모여 아시아태평양전쟁기 강제동원을 주제로 한 논의의 장. 지역별 특성을 전제로 인식의 확대와 스펙트럼의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의 기회

- 연구결과를 시민사회와 공유 : 학문적 성과의 대중적 확산노력. 학계의 역할은 연구 활성화에 그치지 않으므로 학계는 연구 성과의 적극적인 활용을 선도해야 함

□ 시민사회의 역할

- 시민들이 아시아태평양전쟁 역사를 객관적이고 건강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두 가지 선행과제 : 학계의 노력(역사교과서 기술의 오류나 대중강좌를 통해 잘못된 내용이 확산되는 책임은 학계에 있으며, 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역사문화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콘텐츠 생산도 학계의 몫). 언론과 미디어가 시민사회에 미치는 역할(일본의 전시체제기와 패전 직후에 언론과 미디어는 프로파간다의 도구로 활용. 현재 언론의 역할을 돌아볼 것대)

□ 위원회 관련 참고자료

< 법으로 규정한 업무 >

-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 피해관련 국내외 자료수집·분석,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 유해 발굴 및 수습
-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
- 사료관 및 추도공간(제정 법률에는 '위령공간') 조성
- 호적 등재 사항

<표 1> 피해조사 결과 현황 (단위:건)

구분	계	군인	군무원	노무자	위안부	기타
계	226,583	33,398	37,033	155,479	336	337
피해자	218,639	32,857	36,702	148,961	23	96
각하	449	21	23	339	7	59
기각	1,318	195	104	966	1	52
판정불능	6,177	325	204	5,213	305	130

<표 2> 피해조사 피해유형별 결과 현황 (단위:건)

구분	계	군인	군무원	노무자	위안부	기타
사망	19,205	3,305	8,704	7,180	-	16
행방불명	6,380	1,062	974	4,334	-	10
후유장해	3,398	414	583	2,398	1	2
귀환 후 사망	145,944	16,549	19,689	109,643	7	56
귀환 후 생존	43,712	11,527	6,752	25,406	15	12
계	218,639	32,857	36,702	148,961	23	96

<표 3> 진상조사 결과 현황 (단위:건)

구 분	합계	조사개시			각하	취하
		소계	완료	판정불능		
계	57	33	32	1	4	20
신청접수	52	28	27	1	4	20
직권조사	5	5	5		-	-

<표 4>지원금 등 지급내역 (단위 : 건)

구분	계	위로금		지원금	
		사망·행불	부상장해	미수금	의료지원금
지급	72,631	17,880	13,993	16,228	24,530
기각	31,186	1,852	17,775	10,903	656
각하	8,739	950	1,509	6,198	82
결정금액	618,430	360,073	102,185	52,182	103,990

<표 5 > 위원회 수집 자료 현황(2015.12월 말 기준)

구분	종류	규모(건)
문헌자료	원본 명부	52
	사본 명부(이미지 포함)	377
	원본 문서	346
	사본 문서	2,882
	소계	3,657
박물자료	의복, 신발, 명찰, 집기, 기타	81
시청각자료	동영상	410
	사진 및 필름	1,229
	소계	1,639
계		5,377

〈표 6〉 강제동원위원회 잔여업무 예상 현황표

업무 주제	업무 성과	잔여 업무
피해조사 및 위로금 지급 신청	· 피해조사 : 226,583건 처리 *강제동원 피해자 총 782만 명 대비 3% · 위로금 등 신청 : 121,261건 처리 *강제동원 피해자 총 782만 명 대비 1% 이하	· 일정시피징용자명부 등재자 중 미신청자 14,867건, 피해결정자 중 미신청자 7,433건, 사할린영주귀국자 추가 신청 400건 등 총 22,700건 예상
강제동원 관련 추가 자료 입수 및 분석	· 총 180만 건 명부 수집 및 분석 · 일정시피징용자명부 229,784건 중 23,110명 조사 완료	· 일본 소장 우편저금명부, 예탁금 자료, 사할린 소재 한인기록물 등 수집 필요 · 일정시피징용자명부 229,784건 중 미분석 잔여건 206,674건
강제동원 사망자 유 해 조사 및 봉환	· 일본지역 군인군속 423위 봉환 · 일본지역 노무자 유골 2700위 현황 확인 · 러시아 사할린 유해 36위 봉환완료 · 사할린 공동묘지 전수 조사 완료 · 시베리아 및 중국 해남도 유해 조사 및 봉환 협의 중	· 일본지역 노무자 유골 2700위 봉환 · 사할린 잔존유해 14,000위 중 희망 유골 봉환 추진 · 시베리아 유해 조사 및 중국 해남도 봉환 추진 · 유족 대상 DNA은행 운영

4

토론문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1) 한일 간 복합 갈등의 배경/특징

-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구조적 변화
- 양국 국민의 상대방에 대한 낮은 호감도와 높은 불신감
-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 경시(외교청서)
- 한국의 대일정책 부재, 이상과 현실의 부조화
- 양국 지도자의 가치관, 철학의 대립과 신뢰 결여
- 미래에 대한 인식과 비전의 차이

(2) 양국 국민의 낮은 호감도와 높은 불신감

- 일본 내각부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2018.10.18-28.)
 - 한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다’ =39.4%,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 =58.0%
 - 한일관계 ‘좋다’ =30.4%, ‘좋지 않다’

- 한일관계 ‘중요하다’ =69.8%, ‘중요하지 않다’ =25.8%
- o NHK 여론조사(2018.11.9.-11.)
 -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있다’ =2%, ‘납득할 수 없다’ =69%
 -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56% ‘제소할 필요가 없다’ =5%
- o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5월 24-26일 조사, 한국일보, 6월 11일)
 -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 는 74%로 과거 최고(2018년 60%보다 14%p 증가)
 - “일본을 신뢰할 수 없다” 는 75%
 - “한국에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다” 64%, “친밀감을 느낀다” 32%의 두 배
 - “일본에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다” 71.6%, “친밀감을 느낀다” 는 25.9%
- o 요미우리신문 조사(2018.11.30.-12.2.)
 - 일본에 군사적 위협이 될 나라는? 북한=77%, 중국=75%, 러시아 =62%, **한국=42%**, 미국=34%
 - 한국에 대한 위협 인식 증가(2002=6%, 2008=19.9%, 2016=26%, 2018=42%)
- o 양국 지도자의 역사관/가치관 대립: 임정/3·1운동 100년 vs 2015년 아베 담화
 - 2017년 7월 7일 함부르크 G20 참석 계기 첫 정상회담 이후 양자 5회, 한미일 2회, 한중일 1회 정상회담 및 11회 전화회담, 신뢰감 약함
 - 서틀외교 재개 합의했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
- o 양국 사이의 불신감의 원인
 - 일본 내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 국제법을 무시하는 한국 이미지 고착: 2015년 12월의 한일 위안부 합의 무력화, 한일청구권협

정 사문화

- 한국 내 잘못된 과거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 양심적 일본인 인식 혼재
- 일본의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 자의적이고 일방적인가?
- o 미래에 대한 인식과 비전의 차이: 한반도평화프로세스(신한반도체 제론) vs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

(3) 일본 외교청서에 나타난 한국 인식(일한관계, 일한경제관계, 한국정세)

2014년판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의 기본적인 가치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확보 등의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곤란한 문제 존재하나 대국적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이며 중층적 관계 구축 중요
2015년판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양호한 일한관계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불가결, 대국적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이며 중층적 관계 구축 중요
2016년판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나라로 양호한 일한관계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불가결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미래지향의 신시대로 발전
2017년판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나라로 일한 양국의 연계와 협력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불가결 다양한 차원에서 의사소통, 상호신뢰 하 미래지향의 신시대로 발전
2018년판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나라’ 표현 삭제 2017년판에 없었던 독도관련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 포함 일한 양국의 연계와 협력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불가결 다양한 차원에서 의사소통, 상호신뢰 하 미래지향의 신시대로 발전

o 2019년판 외교청서(4월 23일 각의 보고, 요약본 공개)

- ‘최대한의 압력’ 등 북한에 대한 억제적 표현, 대북정책 전환의 시그널?
- 한국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한 표현

한국	북한
2018년 양국 국민 간 교류 견조, 왕래자 처음으로 1천만 명 상회 대법원 판결,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 국제관함식 불참, 한국 해군 레이다 조사 등 언급하며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이어져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2017~2018년판의 “상호신뢰 하 미래 지향의 신시대로 발전시켜 간다” 삭제	일조관계 항목 3년 만에 부활 “압력을 최대한까지 높여 간다” 삭제 북미정상회담 반영해 국제사회가 하나가 되어 북미프로세스 지원 중요 “지금까지 없었던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 삭제(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본질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압력을 수단으로 납치 문제의 해결을 북한에 요구해간다” 삭제, 납치문제 해결이나 국교정상화 등 기본입장 불변

(4)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해석

- o 식민지배의 불법성 인정, 불법적 식민지배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인정 → 강제동원 피해자 이외로 재판 확대 소지 있는가?(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나?)
 -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 불법적인 일본의 법률과 이에 근거한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독립지사를 체포, 감금, 처벌한 것도 모두 무효”이며 “한반도의 인민을 징용으로 끌고 간 것을 포함하여 한반도 인민에게 피해를 가한 일체의 행위는 모두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개인이 위자료 청구권 존재하는가?
- o 조약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의 존재 여부
 - 한일 간 해석상의 분쟁은 ①징용이나 강제동원이 청구권협정의

대상인가, ②그것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 하는 것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 포함

- 청구권협정에 청구권의 원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일부 존재: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영토의 분리·분할에 따른 재정상·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를 해결’ 해야 했으며, 한일교섭과정에서 식민지배의 합법/불법 여부는 최대쟁점, 13년 8개월간의 교섭과정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 인정을 관철하려고 했다면 국교수립 불가능, 합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차선책
- 청구권협정 유효한 상황에서 동 협정 제3조에 따른 외교 협의와 중재위원회 설치 요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도적 무대응: 국제법 무시,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와 국민의 신뢰감 저하 요인
- o 청구권협정, 교섭담당자, 청구권 금액에 대한 인식
 - 대법원 판결문 16-17쪽: “1961.5.10.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과정에서 대한민국측이 ‘다른 국민을 강제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입힌 피징용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 을 언급한 사실, 1961.12.15. 제6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과정에서 ……총 12억 2,000만 달러를 요구하면서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대한민국이나 일본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구체적인 교섭 과정에서 교섭담당자가 한 말에 불과하고, 13년에 걸친 교섭 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장되었던 내용도 아니다. ‘피징용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 을 언급한 것은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발언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협상 과정에서 총 12억 2,000만 달러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구권협정은 3억 달러(무상)로 타결되었다. 이처럼 요구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3억 달러만 받은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 무상 3억, 유상 2억 달러 이외에 상업차관을 포함하면 일본의 경제협력자금은 약 10억 달러, 한국군의 베트남파병에 따른 특수 약

10억 달러와 함께 한국 경제발전의 시드머니가 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음

- 해방 후 미군정 당국이 몰수했던 일본 측 자산(한일 교섭 당시 일본이 주장했던 역청구권)이 한국 정부 수립 후 한국 측에 이관

* 일본 측 자산(적산): 남북 53억 달러(남: 23억 달러, 북:30억 달러)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배상·경제협력]

대상국	국교수립형식	협정 약칭 (조인일자)	공여금액 (무상공여기간)
미얀마	양국 간 평화조약 (1955)	배상 및 경제협력협정 (1954.11)	배상 2억, 차관 5천만 달러(10년)
		추가협정(1963.3)	무상공여 1.4억 달러, 차관 3천만 달러(12년)
태국	국교재개 (1952)	특별 엔 문제 해결 위한 협정(1955.7)	청산금 54억 엔, 차관 96억 엔(5년)
		추가협정(1962.1)	차관무상공여로 전환(8년)
필리핀	평화조약비준 (1956)	배상협정(1956.5)	배상 5.5억 달러 경제개발차관 2.5억 달러(20년)
인도네시아	양국 간 평화 조약(1958)	배상협정(1958.1)	배상 2억 2,308만 달러 경제개발차관 4억 달러 회수불능채권포기 1억 7,691만 달러(12년)
라오스	평화조약비준 (1953)	경제기술협력협정 (1958.10)	무상공여 10억 엔(2년)
캄보디아	평화조약비준 (1953)	경제기술협력협정 (1959.3)	무상공여 15억 엔(3년)
남베트남	평화조약비준 (1953)	배상협정(1959.5)	배상 3,900만 달러 경제개발차관 750만 달러(5년)
말레이시아	정부승인 (1957)	1967년9월21일 협정	29.4억 엔(3년)
싱가포르	정부승인 (1965)	1967년9월21일 협정	29.4억 엔(3년)

출처: 『岩波講座 東南アジア史 第8巻 国民国家形成の時代』, 岩

波書店, 2002, p.291

*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무상 3억 달러(1,080억 엔), 유상 2억 달러(720억 엔)

* 1964년 한국 수출 1억 달러, 일본의 외환보유액 15억 달러

(5) 대법원 판결 이후의 한국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

-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협정을 넘어선 것으로 양국 정부가 외교로 풀어야 함.
- 2015년 12월의 위안부 합의 비판 근거가 ‘피해자중심주의’, 대법원 판결 이후 피해자와 피해자/유족 단체, 변호인단과 접촉한 결과 가 6월 19일 한국 정부 제안인가?
 - * 6월 19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단과 지원단의 입장 발표: “한국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한일 양국 간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종합적인 해결을 요구하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소송절차에 나가지 않은 많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포괄적 협의를 요청해온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입장” “피해자들과의 협의 또는 동의를 필요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피해자, 대리인단 및 지원단 등과 구체적인 안에 관한 공식적인 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고 비판함
- ‘피해자의 수용성, 국민의 동의’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 일본 정부가 당일 오전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오후에 외교부가 공식 발표한 것은 내용과 절차 면에서 문제가 있음. 한국 정부의 입장을 내외에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이 협약해진 한일관계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6) 독일과 일본의 비교

- 전쟁책임 인정하고 반성하는 독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일본이란 정형화된 평가는 타당한가?
- ‘기억책임미래’ 재단은 독일 정부와 기업이 출연한 재단, 미국에

서의 독일 기업 상대 소송이 제기

- 독일정부는 인종차별이나 나치 칭송 등을 법적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전쟁책임 인정한 적이 없으며, 강제노동에 대한 법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아 엄밀한 의미에서 국가배상이 아니며(강제노동은 독일의 연방보상법 적용 대상이 아님), 인도적 차원에서의 자발적 보상임. 2001년 보상 시작해 100개국에 걸쳐 166만 명의 피해자에 대해 총 43.7억 유로(1인당 보상액은 2,560-7,670유로) 지급하고 2007년 6월에 종료됨.

(7) 개인적 의견

o **최악의 상황 회피 위해 양국 정부가 노력**: 일본 정부는 8월 7일 공포된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의 시행을 유예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동결 위해 피해자 측의 이해와 협력을 얻을 필요가 있음.

- 문재인 대통령 7월 15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한국 정부 제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을 베이스로 한 외교 교섭 시작해야 함.
-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은 우리 정부의 피해자 구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가? 한국 정부가 주도하여 가칭 ‘한일화해협력기금’을 만들어 한국과 일본 기업에 참여를 요청하고 나아가 일본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경우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만이 아니라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의 각종 혜택을 받아 성장한 기업도 참여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강제동원과 관련이 없는 기업이나 한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해온 기업이 참여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구제와 역사교육, 미래세대의 교육과 교류 통해 한일 간의 화해와 협력을 심화해가는 사업 추진

o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 모색**

- ‘1965년 체제’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기본조약이나 청구권협

정 파기는 대재앙, 현재 상태 지속되면 1965년 (국교수립) 이전 상태로 돌아갈 상황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그 영향은 한일 양국(국민)에 그치지 않을 것임.

- 한반도와 동아시아 국제정세 변화에 관한 인식과 미래 비전에 관한 협의 채널(**외교국방 장관급 2+2**) 신설하고 양국 정상 간 공동선언 준비.
- 냉전시기 1969년 11월의 사토-닉슨 미일정상회담에서의 한국조항 (한국의 안전은 일본의 안전에 긴요=essential) 초월해 한반도 평화가 일본의 평화에 긴요하다는 인식의 전환 필요함.
- o 대일정책의 재검토 후 적극적인 대일외교 전개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긴밀한 공조 및 협력 강화를 통한 일본의 건설적 역할 견인”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2018년 12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투트랙 기조 하에 과거사 문제가 협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고위급 차원의 소통을 강화” (2019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9년 3월 13일, 외교부) 등에 입각해 적극적인 대일외교 추진

[한반도 통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민주평통 여론조사)]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2019 2/4	66.3	25.6	1.8	1.5
2019 1/4	61.4	28.5	1.8	1.7
2018 4/4	61.8	29.0	2.6	1.9
2018 3/4	66.0	25.5	1.2	1.3
2018 2/4	59.5	30.9	1.9	1.5
2018 1/4	53.4	34.2	2.0	1.9
2017 4/4	39.3	50.4	2.7	1.9
2017 3/4	38.7	47.5	3.6	2.0
2017 2/4	37.1	52.6	1.9	1.6
2017 1/4	39.9	52.1	0.8	1.8

-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북미 및 북일 관계정상화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고 현재의 한일관계는 북미 및 북일 관계에도 큰 영향 미칠 것임. 북일 관계정상화와 남북일의 삼각협력체제 모색을 위한 적극적인 대일외교가 필요함(2020년 7월 개막 도쿄올림픽 계기로 남북일 3국 정상회담 개최 추진 필요)
 -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 등장 이후 2013년 12월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 책정, 두 번의 방위계획의 대강 개정 등 일본의 국가전략이나 외교안보정책 변화가 한국에서는 ‘군사대국화, 보통국가화’ 추구 인식이 지배적
 - 일본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기대할 것인지 자문자답 필요
 - ‘1965년 체제’로의 회귀가 아니라 국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 필요함.
 - 2018년 12월 개정 방위계획의 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 ①우주 활용 정부수집능력 강화 및 우주공간 감시체제 구축, ②단거리이륙·수직착륙기(STOVL) 도입, 이즈모 개조 사실상 ‘항모’화, ③육해공 공동의 사이버방위부대, 해상수송부대 신설, 전자파관련 정부수집 및 분석 공유를 위한 자위대 내부 및 통합막료감부에 전문부서 설치, 항공자위대 내에 우주영역 전문부대 및 무인기 부대 신설, 육상자위대에 탄도미사일방위부대 신설 계획, ④자위대 능력 강화: 우주상황감시(Space Situational Awareness) 시스템 정비, 스텔스 능력 향상(F-15, F-35A), 이지스어쇼어 배치(아키타, 야마구치), 도서방위를 위한 스탠드오프미사일 보유, ⑤향후 5년간 방위력정비예산 27조4,700억 엔, 이전 중기방(2013-18)보다 2조8천억 엔 증가, 역대 최대 규모
- o 대일 공공외교 적극 추진
- 대법원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는 약 70%의 일본 국민, 수출 우대조치국가에서의 한국 제외를 지지한다는 55%(일본 NHK 8월 2-3일 조사)의 일본 국민을 상대로 한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음.

- 일본 내 양심적인 소수파와의 연대와 더불어 일반 국민 대상 공
공외교 필요
- 양국의 책임 있는 당국자나 정치 지도자의 감정적이며 자극적인
언행 자제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 필요

5

한일관계 진단과 해법

남 상 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장

1.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관련 동향 및 전망

○ 동향

- 대법원 판결 이후 원고가 자산 압류 신청 등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 정부에 외교합의, 중재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
-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1+1 재단 설립’을 통한 해결을 일본 정부에 제안했으나 일본 정부는 여기에 응하지 않음.
- 7월 1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방침을 발표한 이후에는 초점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이 아니라 ‘경제전쟁’으로 바뀜.

※ 자료1 참조

○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로 인한 한일 간 갈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여러 방안을 제시했는데, 한국 정부가 이에 성실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레토릭이 만들어짐

- 한일 간에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가 존재하는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관한 한일 간의 논란이 장기화 되고 국제 여론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

2.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로 인한 한일 갈등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 필요

-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은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명기된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에 해당되는가?

- 일본 정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규정, 즉 협정 제3조에 명기된 분쟁으로 보고 해결(외교상 경로를 통한 해결, 중재위원회 회부,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구성) 요청

- 한국 정부: 사법부(대법원) 판결 존중, 정부 개입 불가능

※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었다며,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은 협정 대상이 아니었다고 판결

⇒ 청구권협정의 틀에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문제로 보고 청구권협정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해결을 모색할 것인가?

방침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정부차원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경우, 그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 강제동원 피해자라고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분류가 가능함.(※ 자료2, 3 참조)

	노무자		군인	군무원
	한반도 내	한반도 외		
강제동원 피해자 전체	6,488,467명	1,045,962명	209,279명	60,668명
강제동원위원회 피해인정		148,961명	32,857명	36,702명
생존자 (의료지원금 수급자, 2019년)		4,034명		
소송 원고		대법원 승소: 3건, 28명 대법원 계류: 9건, 118명 지방법원 계류: 4건, 869명		

⇒ 정부차원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지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는 의미는 무엇인가?
- 일본 정부도 사법부도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하나, 법을 통해서 구제받을 권리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업이 임의적·자발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사용
- 일본 기업이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일본 국내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

- ※ 신일철주금 손해배상청구소송(1997)과 일본강관 손해배상청구소송(1999), 후지코시 손해배상청구소송(2000) 3건은 피해자와 기업이 화해함.
- 신일철주금 소송에서 회사는 유족 10명은 유골이라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 회사측은 유골을 받지 못한 원고 10명에게 1인당 200만 엔, 유골을 받은 1명에게는 5만 엔, 한국 내 추도행사 비용 일부를 지급
- 일본강관 소송에서 회사는 ‘원고의 주장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장애를 갖고 오랫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 진지한 마음을 표한다’ 며 ‘해결금’ 410만 엔 지급
- 후지코시 소송에서 회사는 ‘해결금’ 으로 원고 3명을 포함한 8명과 유족단체에 3천 수백만 엔을 지급, 원고는 기업이 책임과 사죄를 명기하지는 않았으나 ‘해결금’ 지급을 실질적으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

3.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

- o 강제동원을 포함하여 식민지배로 인한 피해와 인권침해 실태를 밝히는 정부차원의 종합보고서 발간 필요
 - 일본 측에 관련 자료 공개 요청(※ 산업유산정보센터 설립을 위해 자료를 수집해 옴)
- o 한일 간 역사인식 차이를 메워나가기 위한 공동 연구 필요

자료1. 대법원 판결(2018.12.30.) 이후 주요 동향

<대법원>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신일철주금 주식회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수의견(7명)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으로 1965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11월 29일에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건에 대해 동일한 논리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

일본 정부는 10월 30일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상이 담화를 발표하여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체결된 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동 담화는 영어, 한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로 번역되어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일본 정부의 주장은 동년 11월 19일 외무성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팩트 시트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란?』>에 잘 드러나 있다. 요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은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했고, △동 협정은 서명일 이전에 발생한 청구권에 대해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고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서 70년 전에 일했던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의 청구를 인정해 위자료 지불을 명령했는데, △이것은 청구권협정 위반이며,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것이다. 11월 29일 고노 외상 담화에서는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에게 양국 간 협의와 중재위원회 회부,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외무성 홈페이지를 기초로 일본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판결 확정에 대한 외상 담화(2018년 10월 30일)
-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판결 확정에 대한 외상 담화(2018년 11월 29일)
-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 요청(2019년 1월 9일)
-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 요청에 대한 답변 독촉(2019년 2월 12일)
-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관해 가나스기(金杉)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김재경 한국대사관 차석공사에게 의견 표명(2019년 5월 1일)
-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하고 일본 측 중재위원을 임명(2018년 5월 20일)
- 아키바(秋葉) 외무사무차관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 초치(2019년 5월 20일)
-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관련 가나스기(金杉)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김경한 한국대사관 차석공사 초치,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구성 요청(2019년 6월 19일)
- 반도체 재료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발표(2019년 7월 1일)

<한국 정부>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30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2019년 1월 1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에

관여할 수 없으며 정부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피해자의 실질적인 고통을 치유하는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이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일본 정부가 요청한 양자 간 협의나 중재 회부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았다. 6월 19일에는 외교부가 <강제징용 판결문제 우리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화해를 이루는 방안을 일본 정부가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원고>

대법원에서 승소한 원고 측은 소송 당사자인 개별 기업에게 대법원 판결에 따른 논의를 위한 협의를 요청했고 일본 본사를 방문했다. 하지만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청구권협정 및 이에 관한 일본 정부 견해, 일본의 확정 판결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며 원고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2019년 1월 2일 원고 측은 일본제철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 자산의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1월과 3월에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PNR 주식 19만4794주(9억7000만 원 상당)를 압류했다. 원고 측은 5월 1일에는 일본제철의 압류 자산을 현금화해 달라는 내용의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도 3월 2일 미쓰비시중공업 소유의 한국 내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의 매각 명령을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3월 22일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압류를 결정했다. 채권액은 원고 4명분 약 8억 400만원이다. 신청 이후에도 일본 기업에게 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자 7월 23일에는 압류자산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주요 동향>

연월일	원고	일본 정부	한국 정부
2018. 10.30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손해 배상소송 원고 승소(대법원)	고노 외상, 판결에 항의하는 담화 발표	이낙연 총리, 종합적 대책 마련 방침 발표
11.7			이낙연 총리, 일본 각료 발언에 대해 유감 표명
11.8			외교부, 일본의 신중한 대응 촉구
11.19		외무성 홈페이지에 <팩트 시트「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란?」> 게재	
11.29		고노 외상,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 요구 담화 발표	
2019.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일본제철 주식 압류 신청		
1.9		양국 정부 간 협의 요청	
1.10			문재인 대통령, 사법부 판결 존중 입장 표명
1.23		고노 외상, 강경화 장관에게 정부 간 협의 요청(스위스)	
2.12		협의 요청에 대한 답변 독촉	
2.15		고노 외상, 강경화 장관에게 정부 간 협의 요청(독일)	
3.2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 압류 신청		
5.1	일본제철의 자산 매각 명령 신청		
5.20		중재위원회 설치 및 중재위원 인명 요청(기한 6.18 지정)	
6.18			외교부 대변인, 중재위원회 관련 신중한 대응 표명
6.19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 요청(기한 7.18 지정)	한일 기업 출자(1+1)에 의한 재단 설립, 배상 방안 발표
7.1		반도체 재료 등, 3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발표	
7.17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 요청 거부 방침 발표
7.23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 매각 명령 신청		
8.2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각의 결정) *21일 후 시행	

자료2.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규모

○ 조선인 동원규모는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939년부터 1945년까지 한반도 외로 동원된 노무자는 1,045,962명임.¹⁾

강제동원 피해총수 (중복 동원 인원 포함)						
노무자 동원			계	군무원 동원		계
한반 도 내	도내동원	5,782,581	6,488,467	일본	7,213	60,668
				조선	12,468	
	관 알 선	402,062		만주	3,852	
				중국	735	
	국민징용	303,824		남방	36,400	
					군인 동원	계
한반 도 외	국민징용	222,217	1,045,962	육 군 특 별 지 원 병	16,830	209,279
				학 도 지 원 병	3,893	
	활당모집 관 알 선	823,745		육 군 징 병	166,257	
				해 (지 원 병 포 함)	22,299	
총계	7,804,376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자와 피해인정 건수는 다음과 같음.

구분	계	군인	군무원	노무자	위안부	기타
신고조사 건수	226,583	33,398	37,033	155,479	336	337
피해인정 건수	218,639	32,857	36,702	148,961	23	96
사망	19,205	3,305	8,704	7,180	-	16

1)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129쪽.

행불	6,380	1,062	974	4,334	-	10
후유장애	3,398	414	583	2,398	1	2
귀환후 사망	145,944	16,549	19,689	109,643	7	56
귀환후 생존	43,712	11,527	6,752	25,406	15	12

※ 출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http://cafe.daum.net/1945-815>)에서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2019년 2월 현재 의료지원금을 받는 생존자는 4,034명임.
- 연도별 의료지원금 수급자 현황은 ▲2011년 1만7,148명 ▲2012년 1만 6,014명 ▲2013년 1만3,854명 ▲2014년 1만1,717명 ▲2015년 9,937명 ▲2016년 8,075명 ▲2017년 6,570명 ▲2018년 5,245명 ▲2019년 4,034명

※출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http://cafe.daum.net/1945-815>)

자료3.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현황

-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현황은 △대법원 승소 판결 3건 28명, △대법원 계류 중(상소 포함) 9건 118명, △지방법원 계류 중 4건 869명, △계 16건 1,015명
- ※ 원고 중에는 소송을 시작한 원고는 1명이나, 원고 사망 후 소송수계인인 다수인 경우가 포함되어 있음.

	피고 기업	사건번호	원고	경과
1	신일철주금(1차) (현 일본제철)	대법원 2013다 61381	여운택 외 3명	서울중앙지법 2005.2.28. 제소 대법원 2012.5.24. 파기환송 서울고법 2013.7.10. 원고 일부승 대법원 2018.10.30 원고 승
2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정용)	대법원 2013다 67587	망 박창훈의 소송수계인 박 재훈 외 22명	부산지법 2000.5.1. 제소 대법원 2012.5.24. 파기환송 부산고법 2013.7.30. 원고 일부 승

				대법원 2018.11.29. 원고 승
3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1차)	대법원 2015다 45420	양금덕 外 4명	광주지법 2012.10.24. 제소 광주지법 2013.11.1. 원고 일부 승 광주고법 2015.6.24. 원고 일부 승 대법원 2018.11.29. 원고 승
			28명	
4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1차)	대법원 2019다 3226	김계순 外 34 명	서울중앙지법 2013.2.14. 제소 서울중앙지법 2014.10.30. 원고 일부 승 서울고법 2019.1.18. 원고 승 ⇒ 현재 대법원 계류 중
5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3차)	대법원 2018다 303653	양영수 外 3명	광주지법 2014.2.27 제소 광주고법 2017.8.11. 원고 일부 승 광주고법 2018.12.5. 원고 승 ⇒ 현재 대법원 계류 중
6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2차)	대법원 2019다 216787	김옥순 外 4명	서울중앙지법 2015.4.7 제소 서울중앙지법 2016.11.23 원고 일부 승 서울고법 2019.1.30. 원고 승 ⇒ 현재 대법원 계류 중
7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2차)	대법원 2019다 203644	이경자 外 1명	광주지법 2015.5.22. 제소 광주지법 2017.8.8.원고 일부 승 광주지법 2018.12.24 원고 승 ⇒ 현재 대법원 계류 중
8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3차)	대법원 2019다 220021	이춘면	서울중앙지법 2015.5.22. 제소 서울중앙지법 2017.3.16. 원고 일부 승 서울고법 2019.1.23. 원고 승 ⇒ 현재 대법원 계류 중
9	신일철주금(3차) (현 일본제철)	대법원 2018다 47533	정복인 外 2명	서울중앙지법 2013.2.14. 제소 서울중앙지법 2016.8.19. 원고 일부 승 서울고법 2018.11.29. 원고 승 ⇒ 현재 대법원 계류 중
10	히타치조선 주식회사	대법원 2019다 208021	이희열	서울중앙지법 2014.11.14. 제소 서울중앙지법 2016.10.7. 원고 일부 승 서울고법 2019.1.11. 원고 승 ⇒ 현재 대법원 계류 중
11	신일철주금(2차) (현 일본제철)	서울고등 법원	곽해경 外 6명	서울중앙지법 2013.03.11. 제소 서울중앙지법 2015.11.13. 원고 일부

		2015나 32310		승 서울고법 2019.6.26. 원고 승 ⇒ 2019.7.12. 피고 상소
12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징용)	서울고등 법원 2016나 2064327	홍순의 외 59 명	서울중앙지법 2016 8. 25. 원고 일부 승 서울고법 2019.6.27. 원고 승 ⇒ 2019.7.15. 피고 상소
			118명	
13	미쓰비시중공업 외 2명	서울중앙 지법 2013가 합89049	김금상 외 62 명	서울중앙지법 2013.12.9 제소 ⇒ 현재 서울중앙지법 계류 中
14	요코하마고무 주 식회사 외 68명 (회사대표)	서울중앙 지법 2015가 합11064	서창동 외 666명	서울중앙지법 2015.4.21 제소 ⇒ 현재 서울중앙지법 계류 中 (해외 송달 추정)
15	스미토모석탄광업 (변경후→스미세 키홀딩스) 외 16 명	서울중앙 지법 2015가 합13718	송영호 외 84 명	서울중앙지법 2015.5.22 제소 ⇒ 현재 서울중앙지법 계류 中
16	니시마쓰건설 외 8개 기업	광주지법	이재욱 외 53 명	광주지법 2019.4.29. 제소 ⇒ 현재 광주지법 계류 中
			869명	

※ 출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홈페이지(<http://cafe.daum.net/1945-815>),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http://slgodung.scourt.go.kr/main/new/Main.work>)

o 2018.10.30. 대법원 판결 이후 제기된 소송은 현재 광주전남지역 1건 54명임.

- 국무총리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지원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된 광주전남지역 노무 동원 피해자는 2만 6540명
- 2019.3.25~4.5까지 2주 동안 광주시청 민원실에서 광주전남지역 일제 노무동원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하였고, 총 537건을 접수

- 54명의 원고가 4월 29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
- 54명 중 생존자는 3명이고 51명이 유족. 유족 51명 중 자녀가 원고인 경우는 43명이고, 손자가 6명, 조카는 2명. 또한 당시 동원되어 현지에서 사망한 피해자는 6명이고, 강제동원으로 인한 부상과 후유장애를 인정받은 경우는 10명
- 소송 대상 기업은 9개사로, 미쓰비시광업(현 미쓰비시머티리얼) 19명, 미쓰비시중공업 12명, 미쓰이광산(현 니혼코크스공업) 7명, 스미토모석탄광업(현 스미세키홀딩스) 8명,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 3명, 일본광업(현 JX금속) 2명, 후지코시강재 1명, 니시마쓰건설 1명, 히타치조선 1명

※출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http://cafe.daum.net/1945-815>)

자료4.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상’
개요

	시기	관련 근거	성격	대상	인원 건수	금액(백만원)		
						1인(건)당	총액	
1차	1975 ~ 1977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 률(1974)	청구권 보상금	사망 (유족)	8,552명	0.3	2,565	
			청구권 보상금	재산 (유족,생존자)	74,967건 *1엔을 30원 으로 환산 해서 지급	0.09	6,622	
			소계					9,187
2차	2008 ~ 2015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 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07),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 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1)	위로금	사망·행불 (유족)	17,880명 *70년대 30 만원 수급자는 234만원 삭감	20	360,073	
				부상장애 (생존자)	13,993명 *개인당 300 만원~2000 만원	7.3	102,185	
			지원금	미수금 (유족,생존자)	16,228건 *1엔을 2000원 으로 환산	3.2	52,182	
				의료지원금 (생존자)	24,530명	0.8(매년)	103,990	
			소계					618,430

※ 출처: 1차는 대법원 판결문(2018.10.30.), 2차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2016년.

통일전략포럼 보고서/자료집 발간 목록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 (1995. 12)

제 목: 통일·안보정책의 회고와 전망

발표자: 강영훈(전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총재)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 (1995. 12)

제 목: 통일·안보정책의 회고와 전망

발표자: 노신영(전국무총리,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 (1996. 3)

제 목: 대북정책의 기초 - 포용정책 및 비포용정책

발표자: 이동복(전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윤영오(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자: 전정환(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소장)

김영호(중앙일보 전문기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 (1996. 4)

제 목: 한반도 평화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남북한 당사자 원칙, 북-미협정, 혹은 다자간 해결?

발표자: 백진현(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이철기(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토론자: 우재승(세계자유민주연맹 사무총장)

이장희(외국어대 법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5 (1996. 6)

제 목: 4차회담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발표자: 정태익(외무부 차관보)

김도태(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임동원(아태 평화재단 사무총장)

리영희(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6 (1996. 10)

제 목: 남북한 경제협력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발표자: 이한구(대우경제연구소 소장)

토론자: 서진영(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고려대 교수)

이 호(남북대화사무국 자문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7 (1996. 12)

제 목: 남북한 관계의 전망과 한국의 선택

발표자: 박종철(민족통일 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양영식(통일원 자문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8 (1997. 3)

제 목: 잠수한 사건‘사과’이후 바람직한 대북정책

발표자: 이상우(서강대학교 교수)

신정현(경희대학교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9 (1997. 6)

제 목: 통일·안보 정책과 미디어의 역할

발표자: 김정서(동아일보 논설위원)

한중광(KBS 통일방송연구소 소장)

김용호(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0 (1997. 9)

제 목: 김정일 권력승계와 북한의 대남정책

발표자: 전현준(민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1 (1997. 11)

제 목: 북-미 관계 / 한-미 관계의 현안과 쟁점

발표자: 홍규덕(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2 (1998. 1)

제 목: 새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의 향방

발표자: 정세현(민족통일연구원 원장)

곽태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3 (1998. 4)

제 목: 정경분리원칙: 대북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발표자: 권오기(전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4 (1999. 2)

제 목: 1999년 남북한 관계: 북한 변화의 폭, 속도 그리고 방향?

발표자: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조동호(KDI 연구위원)

차영구(국방부 대변인)

안병준(연세대 정외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5 (1999. 6)

제 목: 한·미·일의 대북정책: 공조체제의 문제점 및 전망

발표자: 김재홍(동아일보 논설위원)

박건영(가톨릭대학교 교수)

서동만(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6 (1999. 7)

제 목: 페리 방북 이후 남북한 관계 전망

발표자: 이현경(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성현(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백학순(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7 (1999. 10)

제 목: 페리 보고서 발간 이후의 남북한 관계 전망

발표자: 홍관희(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장달중(서울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8 (2000. 3)

제 목: 2000년대의 남북한

발표자: 서대숙(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미국 하와이대 석좌교수)

이상우(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9 (2000. 5)

제 목: 정상회담과 남북한 관계

발표자: 전인영(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

박건영(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임강택(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서동만(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0 (2000. 10)

제 목: 정상회담 이후의 북한

발표자: 서대숙(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박제훈(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강성윤(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1 (2000. 11)

제 목: 북·미 관계의 현황과 전망

발표자: 박동환(미국 Northwestern대학 교수)

서주석(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서동만(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2 (2001. 2)

제 목: 북한의 개방

발표자: 서진영(고려대 정외과 교수)

오승렬(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백학순(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3 (2001. 5)

제 목: 북·미 관계의 현황과 전망

발표자: 장달중(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백학순(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4 (2002. 2)

제 목: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관계 전망

발표자: 장달중(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박건영(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5 (2002. 8)

제 목: 최근 북한의 정세, 어떻게 볼 것인가

발표자: 김연철(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류길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실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6 (2002. 11)

제 목: 북한 핵문제와 북·미관계

발표자: 고병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전재성(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7 (2003. 5)

제 목: 한미정상회담과 한반도 문제

발표자: 권만학(경희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박건영(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8 (2003. 9)

제 목: 6자회담의 평가와 전망

발표자: 고병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9 (2003. 10)

제 목: 이라크 파병과 한미동맹

발표자: 김재홍(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

조 민(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0 (2004. 4)

제 목: 현단계 남북경협의 쟁점과 과제

발표자: 조동호(KDI 북한경제팀 선임연구위원)

오승렬(한국외국어대 중국어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1 (2004. 6)

제 목: 21세기 한국 대외전략의 방향

발표자: 이수훈(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전재성(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2 (2004. 11)

제 목: 美 대선과 한반도 전망

발표자: 김기정(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봉근(평화협력원 원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3 (2005. 5)

제 목: 남북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발표자: 김근식(경남대 정치언론학부 교수)

김용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4 (2005. 7)

제 목: 제4차 6자회담의 방향과 전망

발표자: 홍현익(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김원수(외교부 외교정책실 정책기획관)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5 (2005. 10)

제 목: 북핵 타결 이후: 쟁점과 과제

발표자: 서동만(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6 (2006. 7)

제 목: 2006년 6월 한반도: 정세와 해법은?

발표자: 백낙청(6.15공동위원회 상임대표, 서울대 명예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7 (2006. 9)

제 목: 작통권 환수 논란, 합리적 대안은 없는가?

발표자: 조성렬(국제문제조사연구소 기획실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8 (2007. 4)

제 목: 2.13 합의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발표자: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전 통일부 장관)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9 (2007. 10)

제 목: 제2차 남북정상회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발표자: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0 (2008. 11)

제 목: 11.4 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

발표자: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1 (2009. 2)

제 목: 2009 한반도 정세: 변화와 과제

발표자: 김기정(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

김연철(한겨레평화연구소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2 (2009. 4)

제 목: 최근 북한의 정치동향과 향후 권력체계 전망

발표자: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전현준(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3 (2009. 7)

제 목: 한미동맹의 미래와 현실

발표자: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종철(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4 (2009. 11)

제 목: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발표자: 윤덕민(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김준형(한동대 국제어문학부 부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5 (2010. 3)

제 목: 6자회담의 현주소와 전망

발표자: 이수혁(전 주(駐)독 대사/6자회담 수석대표)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6 (2010. 12)

제 목: 연평도 포격 이후 한반도: 전망과 과제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7 (2011. 3)

제 목: 천안함 이후 1년: 한반도 정세와 과제

발표자: 백학순(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양무진(북한대학원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8 (2011. 7)

제 목: 발리 회담 이후 6자회담과 남북대화: 전망과 과제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9 (2011. 11)

제 목: 남북 정상회담 가능한가

발표자: 김연철(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정영철(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0 (2012. 5)

제 목: 한반도 정세와 2013년 大전망

발표자: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류길재(북한대학원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1 (2012. 8)

제 목: 김정은 체제의 북한, 어디로 가는가

발표자: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2 (2013. 5)

제 목: 한반도 위기, 출구전략 가능한가

발표자: 김준형(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3 (2013. 8)

제 목: 박근혜 정부 6개월의 평가와 전망

발표자: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인휘(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4 (2014. 2)

제 목: 격랑의 동북아와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외교

발표자: 이상현(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최종진(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5 (2014. 4)

제 목: 김정은 권력 체제의 변화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발표자: 현성일(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6 (2014. 11)

제 목: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 배치와 한반도 안보

발표자: 권명국(전 방공포병사령관)

김홍규(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7 (2015. 5)

제 목: 남북관계의 과제와 해법 모색

발표자: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8 (2016. 4)

제 목: 유엔제재 이후 북한핵문제의 국제정치

발표자: 이동선(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동률(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박인휘(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9 (2016. 11)

제 목: 미국 트럼프 신 행정부 등장과

한국의 외교·안보 및 남북관계 전망

발표자: 이동선(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0 (2017. 12)

제 목: 2017-2018년 격변의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

패 널: 김연철(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 교수)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 근(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희옥(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창수(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1 (2018. 4)

제 목: 2018년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과제

발표자: 박종철(통일연구원)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2 (2018. 12)

제 목: 전문가들이 보는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

발표자: 신석호(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장)

김현경(MBC 통일방송추진단장)

장용훈(연합뉴스 한반도부장)

이제훈(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왕선택(YTN 통일·외교전문기자)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3 (2019.7)

제 목: 북미관계 전망과 남북관계 추진 방향

발표자: 황지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이정철(송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상기(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회원가입 안내

▣ 회 비

● 1년 회비

일반회원 : 50,000원, 학생회원 : 30,000원, 기관회원 : 100,000원

재 가 입 : 회비 만기일 1개월 전에 회비를 재납부하시면 됩니다(안내문 발송함).

● 평생회비

개인평생회원 : 100만원 이상

기관평생회원 : 300만원 이상

● 납부방법 : ① 연구소에 직접 납부

② 우체국 온라인 : 014233-05-000905 (예금주: 경남대학교)

▣ 회원의 혜택

- 본 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가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와 심포지엄 등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본 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Asian Perspective』와 『한국과 국제정치』, 『현대북한연구』, 『동북아연구』를 포함, 소식지 등의 간행물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 본 연구소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대출,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 출판도서 구입시 30%의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평생회원에게는 무료 기증)

▣ 회원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03053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5길 2(삼청동)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담당자: 조인정

전화 : 3700-0726, 팩스 : 3700-0722

E-mail: minju@kyungnam.ac.kr

Homepage: <http://ifes.kyungnam.ac.kr>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본 연구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서 신청하시거나 담당자에게 전화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